##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우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282 발의연월일: 2025. 1. 7.

발 의 자: 김우영·김문수·송재봉

박민규 • 윤종군 • 김 윤

이재강 · 김남희 · 최민희

양문석 · 노종면 · 황정아

정동영 · 조인철 · 박해철

채혂일 • 박주민 • 이정헌

김 현・한민수・조계원

김성환 • 이훈기 • 이광희

임미애 의원(25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함)은 방송·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,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,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,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.

이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공영방송의 이사를 임명 또는 추천하거나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 생하고 있음.

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및 사장 추천·임명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것임(안 제12조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우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 정법률안(의안번호 제7272호) 및 「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안(의안번호 제728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##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호 중 "이사"를 "이사 추천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사장·이사"를 "이사 추천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2조(위원회의 심의・의결 사	제12조(위원회의 심의・의결 사		
항)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			
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・의결			
한다.			
1. ·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		
3. 방송문화진흥회의 <u>이사</u> 및	3 <u>이사 추천</u>		
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			
4. 한국교육방송공사의 <u>사장・</u>	4 <u>이사 추</u>		
<u>이사</u>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	<u>천</u>		
사항			
5. ~ 29. (생 략)	5. ~ 29. (현행과 같음)		